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사라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라복지재단
Sarah Welfare Foundation

제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 어르신의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입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1. 계약만료 및 재계약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입소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기간은 매년 수가변경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년 1월 1일 새로운 수가로 계약을 갱신한다.
- ③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경, 급여 및 비급여 비용의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 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비대상자(이하 “등외자”)의 경우 계약기간 및 비용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에 있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시 안내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비용 및 그 밖의 비급여 비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비급여 항목인 식사,간식비,상급침실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등급외자의 경우 매년 수가(3등급)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절차-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당월 10일 이내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이용료는 사라노인요양시설의 계좌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르신의 만성질환 또는 응급질환으로 의료센터의 진료 및 검사 등의 필요 시, 보호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본 기관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한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한다. 단, 대행비용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별표 1】를 통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래와 같이,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그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인용 특별 침실 사용할 수 있다.
- 감염으로 인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감염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8.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에 대한 간인으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급여 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5)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6) 장기요양급여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을 요구할 권리
- 7) 연말정산서류를 요구할 권리

10.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
- 2)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3)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 5)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11.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5)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의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13.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서비스 제공자’의 해지 요구

-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③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서비스 제공자’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입소자의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해지 요구

- ①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

기본사항	수 급 자 명		생년월일	
	통지대상자명		관 계	

신체 제한 구속 사유	☐ 절박성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 비대체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음
	☒ 일시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제한함
수급자 상태 (제재사유)	☒ 낙상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피부를 긁어 대상자의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함. ☐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제한 및 예방함. ☐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에 대한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요양보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불안정한 대상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tube, 도뇨관 등 치료적 중요 부착물을 뽑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제재 개인사유> ☐ ☐
시행 시 조치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신체제한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 상담 실시
제 재 방 법	비 대체성 ☒ 침대난간올리기 ☐ 휠체어안전벨트 ☐ 휠체어식판 ☐ 기타
	절박/일시성 ☐ 장갑착용 ☐ 손발 억제대 ☐ 침대에 몸을 묶음 ☐ 격리수용 ☒ 치매복 ☐ 휠체어에 묶음 ☐ 향정신성약복용 ☐ 기타()
통 지 일 시	2025. 00. 00. 시간 (:)
통 지 방 법	☒ 유선 ☒ 방문 ☐ 문자 이후 방문서명 ☐ 기타
제 재 자 명	☒ 000 요양보호사
개시 및 해제	제재일시 2025. 00. 00 (:) 종료(예정)일 제한사유 해소시까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신체제한 실시함을 동의합니다.  사라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사라복지재단 Sarah Welfare Foundation	

【별표 2】 2025년 사라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도 입소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1일 입소비용	90,450	83,910	79,240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11,400원 (식사 1회 당 3,800원)
- 간식비 : 1일 2,000원
- 상급침실료: 1인실 (월60만원)
- 팬티형 기저귀 : 개인부담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 (예)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0일을 사라요양원에 계실 경우
 $30\text{일} \times 1\text{등급 } 1\text{일 입소수가} \times (20\%, 12\%, 8\%) = \text{본인부담금}$
 $\text{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 항목(식재료비} + \text{간식비)} = \text{한 달 시설 입소 비용}$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단, 간식비 1일 2,000원 납부의무)

- 30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본인부담금 20% 기준,진료비 별도)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등급 어르신
944,700	905,460	877,440

- 31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본인부담금 20% 기준,진료비 별도)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등급 어르신
976,190	935,642	906,688